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장애인 취업촉진 특혜조세정책**  **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**  **공고** 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55호  장애인 취업촉진 특혜조세정책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  1. 노무파견 형태로 취업하는 장애인은 노무파견업체의 직원에 속한다. 노무파견업체는 <장애인 취업촉진 특혜조세정책에 관한 재정부·국가세무총국의 통지>(재세[2007]92호, 이하 '<통지>'로 약칭)의 규정에 따라 관련 특혜조세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.  2.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기관과 사업기관의 제도개혁을 통해 설립된 기업이 장애인을 위해 납부한 사업기관 양로보험이 <통지> 제5조 제(3)항에 규정한 '기본양로보험'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특혜조세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.  이 공고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015년 9월 1일 이전에 처리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. 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.  국가세무총국  2015년 7월 31일 |  | **国家税务总局**  **关于促进残疾人就业税收优惠政策相关问题的公告** 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55号  　　现将促进残疾人就业税收优惠政策相关问题公告如下：  　　一、以劳务派遣形式就业的残疾人，属于劳务派遣单位的职工。劳务派遣单位可按照《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促进残疾人就业税收优惠政策的通知》（财税〔2007〕92号，以下简称《通知》）规定，享受相关税收优惠政策。  　　二、安置残疾人的机关事业单位以及由机关事业单位改制后的企业，为残疾人缴纳的机关事业单位养老保险，属于《通知》第五条第（三）款规定的“基本养老保险”范畴，可按规定享受相关税收优惠政策。  　　本公告自2015年9月1日起施行。此前未处理的事项，按照本公告规定执行。  　　特此公告。  国家税务总局  2015年7月31日 |